

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2021. . .
제출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을 사용검사일부터 20년이 경과된 단지로 수정하여 더 오래된 노후 공동주택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- 제24조제2항 지원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를 수정
 - 당초 : 사용검사일부터 10년 → 변경 : 사용검사일부터 20년

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10년”을 “20년”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24조(지원범위 및 대상) ① (생략)	제24조(지원범위 및 대상) ① (현행과 같음)	제24조(지원범위 및 대상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(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)부터 10년이 경과된 단지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 등을 말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년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	1. (현행과 같음)
2. <u>상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(건축물 내부 시설물은 제외)</u>	2. <u>상하수도 관련 시설, 가스공급시설 보수</u>	2. (개정안과 같음)
3. ~ 13. (생략)	3. ~ 13. (현행과 같음)	3. ~ 13. (현행과 같음)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	③ (현행과 같음)

조례 제 호

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10년”을 “20년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 2호 중 “상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(건축물 내부 시설물은 제외)”을 “상하수도 관련시설, 가스공급시설 보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